

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(약칭: 화물자동차법 시행령)

[시행 2025. 11. 1.] [대통령령 제35832호, 2025. 10. 28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허가, 위수탁계약, 양도양수, 상속) 044-201-4022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안전운임, 안전운송원가) 044-201-4019, 4020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택배, 자가용유상운송, 차고지, 주선) 044-201-4023

국토교통부 (물류산업과-운수증사자격, 적재물 배상보험) 044-201-4026

국토교통부 (물류정책과-유가보조금) 044-201-3996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1. 24.]

제2조(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9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
2. 「한국공항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공항공사
3. 「한국도로공사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공사
4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5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6.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

[전문개정 2019. 6. 25.]

제3조(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)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"란 20대를 말한다.

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상호의 변경
2. 대표자의 변경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3.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
4. 화물자동차의 대폐차(代廢車)
5. 주사무소 ·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. 다만,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.

③ 법 제3조제9항(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5년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9. 6. 25.]

제3조의2 삭제 <2019. 6. 25.>

제4조(운임 및 요금의 신고) 법 제5조제1항(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운송사업자"라 한다)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운송가맹사업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(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1. 12. 13., 2014. 1. 14., 2018. 7. 3.>

1. 구난형(救難型)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 ·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
2. 삭제 <2020. 6. 16.>
3.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